

의안번호	제504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월 15일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4
----------	-----

발의연월일 : 2024년 1월 15일

발의자 : 김꽃임, 박경숙, 김국기,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4. 1.
- 협의 :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산업육성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인재국장”을 “경제부지사”로, “이차전지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 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이차전지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증언”을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이바</u> <u>지함</u>-----.</p>
<p>제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u>시행계획</u>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4조(이차전지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u> <u>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u> <u>다)</u>--.</p> <p>③ <u>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제5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1. ~ 5. (생략)</p>	<p>제5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u>둔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과학인재국장</u>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이차전지산업 육</u></p>	<p>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경제부지사</u>----- ----- <u>위원 중에서 호선</u></p>

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 설>

한다.

③ -----
-----.

1. 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이차전지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 이차전지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

<삭 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2. (생략)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신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의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비용발생 요인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 조례안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결과

- 추 계 결 과 : 752억 원
 - 이차전지산업 육성 지원 12개 사업 : 752억 원
(국 498, 도 163, 시군 78, 기타 13)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자부담)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6,972,306	16,286,816	13,059,000	6,234,000	2,649,000	75,201,122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대응)	1,874,706	2,102,816				3,977,522
	첨단분야(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대응)	4,018,000	4,018,000	4,018,000			12,054,000
	지역혁신 선도연구 센터(RLRC)(대응)	1,650,000	1,650,000	1,650,000	1,504,000	1,504,000	7,958,000
	학연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대응)	2,785,000	2,785,000	2,785,000	2,785,000		11,140,000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대응)	961,000	961,000	961,000			2,883,000
	안전신뢰성 기반 소재부품 시험분석 테스트베드 구축(대응)	17,405,000					17,405,000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대응)	6,845,100	2,825,000	1,700,000			11,370,100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30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00,000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	22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340,000
	이차전지 기술, 시장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4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400,000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기술개발 지원	500,000	800,000	800,000	800,000		2,900,000
	충북 이차전지 산업육성 협의회 운영 지원	13,500	15,000	15,000	15,000	15,000	73,500
재원 조달		36,972,306	16,286,816	13,059,000	6,234,000	2,649,000	75,201,122
의존 재원	소 계	23,495,500	11,830,700	9,567,000	3,680,000	1,180,000	49,753,200
	보조금	23,495,500	11,830,700	9,567,000	3,680,000	1,180,000	49,753,2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331,153	3,072,558	2,590,500	2,135,000	1,235,000	16,364,211
	지방세	7,331,153	3,072,558	2,590,500	2,135,000	1,235,000	16,364,211
	세외수입	-	-	-	-	-	-
시군비		5,811,453	1,091,558	609,500	190,000	90,000	7,792,511
기타(자부담)		334,200	292,000	292,000	229,000	144,000	1,291,200